

##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| 접수일시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| 180일(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240일) |                 |     |
| 신청인             | 상호(명칭)          |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성명(대표자)         |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<br>(전자우편: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소재지(사업장)        | (전화번호: )<br>(팩스번호: 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기준<br>살생물<br>물질 | 살생물물질의 명칭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고유번호(CAS No. 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물질승인번호          |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살생물제품유형         | 제조시설 소재지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신청정보            | 살생물물질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고유번호(CAS No. 등) | 분자식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
| 수입자             | 상호(명칭)          | 법인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     |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성명 및<br>연락처 | 수입국 |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첨부서류           | 1.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<br>2.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과정<br>3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<br>4.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: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| 수수료<br>50,000원<br>(중기업은<br>25,000원,<br>소기업은<br>10,000원)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  |   |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작성방법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,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|        |   |         |   |    |   |        |   |        |
|--------|---|---------|---|----|---|--------|---|--------|
| 신청서 작성 | ⇒ | 접수 및 검토 | ⇒ | 평가 | ⇒ | 위원회 심의 | ⇒ | 통지서 발급 |
|--------|---|---------|---|----|---|--------|---|--------|

신청인

처리기관: 화학물질안전원